



혈중 납 농도 초과 근로자 '작업전환'

유도 사례 - 소규모사업장 검진 후 사후관리 시행 사례 -

¹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및 산업보건연구소, ²연세대 보건대학원, ³인천근로자건강센터
황정호^{1,3}, 최희재^{2,3}, 김동찬³, 최보람³, 윤진하^{1,3}, 노재훈^{1,2,3}

추진배경

-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집중관리사업장 대상으로 '검진 후 사후관리*' 사업을 진행하던 중 '혈중 납 초과 근로자(D1 판정자)'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*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-45호[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] 제20조(사후관리조치) 이행

추진과정

- (근로자) : 주물업 30년 경력, 2012년 현 직장 이직, 청동/황동 용해작업
2014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혈중 납 초과(D1) 판정
- (추진일정) : 2015. 10. 14 첫 상담 ~ 2016. 01. 01. '작업전환' ~ 2016. 현재 후속 관리 중
- (추진 흐름도) : 검진사후관리 중 혈중 납 초과 근로자 '작업전환' 유도 과정



추진결과 및 성과

- 적극적인 소통과정을 통한 중재(사업주/근로자)로 단기간에 상호 만족하는 성과를 달성함
※ 특수건강진단 후 사후조치 - '작업전환'을 실제로 이행시킴
- "작업전환 완료"까지 약 80일 소요(2015. 10. 14 ~ 2016. 1. 1)
- 의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주효하였으며, 산업간호 및 산업위생의 추가적인 지원 상담을 시행함
 - ① 전담의사(가정의학전문의)가 작업환경의학전문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사후관리 조치 방안 제시함
 - ② 전담간호사/산업위생기사 선정하여 해당년도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상태를 긴급 시행토록 안내하고, 특수검진기관에 신속한 검진결과(혈중 납 농도) 판정하도록 직접 전화로 요청하여 처리함 : $47.5 \mu\text{g}/\text{dl}$
 - ③ 특검 결과 확인 후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 의견 및 조건 청취(산업위생기사) 및 사업주에게 급여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작업전환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권유함(의사)
 - ▶ 중재 과정에서 사업주, 근로자와의 소통이 중요함
 - ④ '혈중 납 초과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안내문'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작업전환 동의를 유도함
 - ▶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있었음(간호사, 의사, 산업위생기사)
 - ▶ 특히 의사의 가족과의 상담이 근로자의 작업 전환 결정을 허락하는데 효과적이었음

⑤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과정을 거쳐 2016. 1. 1자로 작업전환 시행(용해작업→절단, 쇼트).

▶ 약 80일 소요

- 효과적인 '검진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략적 골든 타임(Golden Time)'을 확인함
 - ▶ 검진 시행 전 또는 결과 통보 후에 걸쳐 약 90일 이내 사후관리를 권장함(검진이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시행 전에는 전년도 검진 결과를 익히고, 시행 후에는 바로 결과를 보고 상담에 들어감으로써, 근로자와 전문가가 상호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음)
-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후관리조치 '작업전환'을 실제로 이행 완료시킴
 - : 의사의 지속적인 관심, 간호사의 확인, 산업위생기사의 현장 점검 등 세 분야 전문가의 협력과 근로자 및 사업주와의 소통을 통한 중재로 상호 만족하는 성과를 달성함
- 사업주가 작업환경관리 및 특수건강진단의 중요성, 사업장 보건관리(검진 후 사후관리 등)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음
 - : 근로자건강센터의 '우리 회사 주치의 사업장'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함

기대효과 및 시사점

- '전국 근로자건강센터'가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'검진 후 사후관리 기관'으로의 역할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
- 사후관리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검진 후 사후관리 상담 시기에 대한 '골든 타임(Golden Time)'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신속하게 집중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※ 특수건강진단 후 사후조치의 골든 타임(Golden Time)은 '검진 전, 후 약 90일 이내'로 판단됨
- 사후관리 이행이 어려운 조치 항목(예: 근무 중 치료, 근로시간 단축, 작업 전환, 근로제한 및 금지)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적극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중재 활동이 요구됨
- 직업병 유소견자(D1)에 대한 '검진 후 사후관리'는 검진기관, 보건관리기관, 안전보건공단 등 직업건강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정보 공유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함 ☺